

학생 상벌 내규

- | | |
|--|--|
| <input type="checkbox"/> 제정 : 1978. 3. 21.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1. 6. 30.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1979. 3. 1.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2. 6. 29.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1986. 1. 20.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5. 5. 13.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1990. 3. 1.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5. 7. 29.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1995. 3. 1.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7. 2. 28. |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8. 3. 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상벌 및 포상에 관한 기준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생 포상

제2조(포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
2. 교내외에서 선행을 하여 학교 명예를 높인 자
3. 지도력이 탁월하여 학생활동에 공로가 크거나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학생.

제3조(발의)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생활·복지위원회에 상정 발의할 수 있다.

1. 공적조서 1부
2. 상장사본 1부
3. 지도교수 추천서 및 학과장 의견서 1부

제 3 장 학생 징계

제4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의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

6-1-7 학생 상벌 내규

2. 교직원의 학생지도에 불순한 태도나 반항을 하거나 이로 인하여 다른 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학생
3.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지장을 초래케 한 학생
4. 학교의 비품을 절취 또는 시설물을 훼손시킨 학생
5.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6. 학생활동 중 과격한 시위나 혼란을 초래케한 자
7.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8. 각종 행사(집회, M.T, O.T 등)를 사전 승인 없이 주관(참가)한 자
9. 각종 안전사고 유발 등의 행동을 한 자
10. 인권침해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되는 행위를 한 자
(집단활동 연대책임자 포함)
11. 기타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5조(발의) 제4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생활·복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본인 진술서(본인 거부 시 생략할 수 있음) 1부
2. 사건 경위서 1부
3. 지도교수 및 학과장 의견서 1부

제6조(구분) 학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근신은 7일 이내로 하되 수강은 허용하며 특별지도를 받는다.
2. 유기정학은 3주 이내로 하되 수강은 불허하며 특별지도를 받는다.
3. 무기정학은 무기한 수강을 불허하며 징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 개전의 정이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다.
4. 퇴학은 무기정학중인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 자나 제10조의 각 호에 저촉되는 자
5. 경고는 1개월 이내로 하되 수강은 허용하며 주1회 반성문 제출과 특별지도를 받는다.

제7조(근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신에 처한다.

1. 교직원에 대하여 언행이 불순한 자
2.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자
3. 학원내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한 자
4.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자
5. 교내 게시물을 무단 제거한 자

6. 학교당국의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자
7.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자
8. 각종 행사(집회, M.T, O.T 등)를 사전 승인 없이 참가한 자
9. 기타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8조(유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신에 처한다.

1. 근신의 처벌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2.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타인에게 폭행, 얼차려, 협박, 공갈, 정신적, 물질 등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불응(거부)한 자
5.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6. 신고(허가) 없이 공고물이나 유인물을 부착 및 배부한 자
7. 음주, 취사, 흡연 등으로 안전사고 유발 등의 행위를 한 자
8. 각종 행사(집회, M.T, O.T 등)를 사전승인 없이 주관한 자
9. 안전사고 또는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게 한 행위를 한 자 (집단활동 연대책임자 포함)
단, 인권침해 행위가 쌍방 과실일 경우 과실정도에 따라 쌍방 처벌을 원칙으로 한다.
10.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9조(무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유기정학의 처벌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2. 교직원에 대한 불순한 태도를 취하거나 반항한 자
3. 학교시설물을 파손시킨 자나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한 자
4. 집단(개별) 폭행, 얼차려, 협박, 공갈, 성희롱(성폭행)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치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
5. 학원내에서 집단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자
6. 금품 및 물품을 절취 또는 갈취한 자
7. 이유없이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8.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동맹 휴학 시험불응 등을 선동하거나 이를 감행한 자
9. 공금을 유용한 자
10. 교내의 수익성사업에 관여하거나 또는 업자와의 금품수수자
11. 각종 행사(집회, M.T, O.T 등)를 사전승인 없이 주관(참가)하여 안전사고 등으로 치상을 유발한 자
12. 안전사고 또는 인권침해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6-1-7 학생 상벌 내규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자(집단활동 연대책임자 포함)

단, 인권침해 행위가 쌍방 과실일 경우 과실정도에 따라 쌍방 처벌을 원칙으로 한다.

13.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10조(퇴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에 처할 수 있다.

1. 무기정학의 처벌을 받고도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심한 치상을 하였거나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을 가한 자
3. 학교 업무 방해, 서류 탈취, 문서나 직인 등을 위변조 한 자
4. 학교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
5. 실형 선고를 받은 자
6. 타 대학에 입학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 기일 내에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8. 교직원에 대학 폭언(폭행) 또는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동한 자
9. 수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지장을 초래한 자
10. 교내에 불온 유인물을 붙이거나 살포한 자
11. 학교 기물을 손괴 또는 절취한 자
12. 유독성 인화물질을 살포하거나 또는 안전사고 등을 유발 한 자
13. 타 학생을 선동하여 소요 및 시위를 모의하거나 주동한 자
14. 각종 행사(집회, M.T, O.T 등)를 사전승인 없이 주관(참가)하여 안전사고 등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등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자
15. 인권침해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아 기소된 자
16. 기타 각 호에 준 하는 행동을 한 자

제11조(경고) 제7조 내지 제10조 해당자 중 학생생활·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자는 경고 처분을 한다.

제12조(권리의 정지) ① 퇴학 이외의 징계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징계기간 중에도 교수 및 학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으면서 10일마다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② 근신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③ 근신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 부터 해제되는 날 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④ 퇴학 이외의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퇴학 처분한다.

제13조(징계의 해제) ① 삭제

② 징계해제를 요구하는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는 학생에 대한 지도결과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를(학과장 경유)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고, 학생지원처장은 학생생활·복지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해제 여부를 심의한다.

③ 학생지원처장은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통보) ① 학생지원처장은 징계의 사실을 지도교수, 학과장, 학부형과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징계의 종류 및 사유를 교학처에게 통보하여 학적부에 기재토록 한다.

③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관련 내용을 교내 지정된 게시판에 5일간 공지한다.

제15조 삭제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1-7 학생 상벌 내규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